

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-21호

「보험업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안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30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## 1. 개정이유

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(LAT\*) 결과 LAT추가적립액과 동일하게 LAT잉여액(초과액)을 RBC\*\* 지급여력금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

\* LAT : Liability Adequacy Test

\*\* RBC : Risk Based Capital

## 2. 주요 내용

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관련 조문 개선(안 제7-1조)  
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(LAT) 결과 LAT잉여액(초과액)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RBC 지급여력금액으로 반영하는 기준 마련

## 3. 세부개정내용

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‘법령 정보(고시/공고/훈령)’을 참조

※ 금융위원회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